

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장소란의 “513번지 일원”을 “513번지”로 한다.

제4조 제2항 영업시간란의 “15:00 ~ 익일 12:00”를 “05:00 ~ 18:00”로 한다.

제24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96조 본문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중도매업 허가 및 취소, 보조경매참가자 승인, 매매참가인 신고, 출하자 및 산지유통인 등록 또는 취소등의 사무는 내부위임 한다.

【별표 2】 중 경매개시 시각란의 “15:00 ~ 익일 12:00”를 “05:00 ~ 18:00”로 한다.

【별지 제23호 서식】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【별지 제27호 서식】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 제1조 중 “이용과 도매시장 법인이 부담하는 제85조제1항의 표준하역비는”을 “이용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제23호서식】

관리번호		<u>판 매 원 표</u>						담당경매사(판매담당자) :			
판매일시 년 월 일 (:)								정산	검산	기록	경매사
번호	출하조합 (산지명)	출하자	품목 및 품명	중량 및 규격	등급	수량	경락단가	총판매대금	낙찰자 번호 (매수인)	비고	
문 임 선급금				하역 및 선별비				(도매시장 법인명)			

【별지 제27호서식】

일일 시황표

확 인 자 : (인)

작 성 자 : (인)

(도매시장법인명)

년 월 일

부 류	품 목	거래 단위	등급	경락또는 1차 도매가격		거래동향	산지명	주출하자
				최저	최고			

※ 작성품목은 계절별 반입상황에 따라 변경됨.

수 정 조 문 대 비 표

현행				개정안				수정안			
제2조(도매시장의 명칭·장소 및 면적) (생략)				제2조(도매시장의 명칭·장소 및 면적) (현행과 같음)				제2조(도매시장의 명칭·장소 및 면적) (개정안과 같음)			
명칭	장소	면적(㎡)		-----	-----	-----					
		대지	건물			---	---				
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	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513번지 일원	83,049	23,833	-----	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513번지	----	----				(개정안과 같음)
제4조(휴업일 및 영업시간) ① (생략) ② (생략)				제4조(휴업일 및 영업시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				제4조(휴업일 및 영업시간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(개정안과 같음)			
구분		영업시간		-----		-----					
청과부류		15:00 ~ 익일 12:00		-----		05:00 ~ 18:00				(개정안과 같음)	
제24조(허가조건) ① (생략) ② 제1항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종도매인이 사망 또는 질병등으로 영업행위를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호적내에 있는 종도매인 업무보조자로 등록되어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				제24조(허가조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삭제>				제24조(허가조건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(개정안과 같음)			

현행		개정안		수정안	
제65조(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 및 사용) ① (생략) ②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요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.		제65조(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 및 사용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		제65조(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 및 사용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	
품목	요율 (원/톤)	-----	-----	품목	요율 (원/톤)
배추	6,000원/톤	-----	10,000원/톤	배추	6,000원/톤
무	3,000원/톤	---	5,000원/톤	무	3,000원/톤
마늘	5,000원/톤	-----	10,000원/톤	마늘	5,000원/톤
양배추	3,000원/톤	-----	5,000원/톤	양배추	3,000원/톤
파	1,000원/톤	---	2,000원/톤	파	1,000원/톤
양파	3,000원/톤	-----	5,000원/톤	양파	3,000원/톤
③ ~ ⑦ (생략)		③ ~ ⑦ (현행과 같음)		③ ~ ⑦ (생략)	
제96조(권한의 위임등) 시장은 도매 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소장에 권한을 위임한다.		제96조(권한의 위임등) ----- ----- ----- ----- 다만, 중도매업 허가 및 취소, 보조경매참가자 승인, 매매참가인 신고, 출하자 및 산지유통인 등록 또는 취소 등의 사무는 내부위임 한다.		제96조(권한의 위임등) (개정안과 같음)	
1. (생략)		1. (현행과 같음)		1. (개정안과 같음)	

현행				개정안				수정안			
【별표2】 품목별 경매개시시각 및 경매장소				【별표2】 -----				【별표2】 (개정안과 같음)			
품목		경매개시 시각	경매장소	-----	----- ---	-----		(개정안과 같음)			
청과 부류	과일류, 채소류	15:00~ 익일 12:00	구미시농산물 도매시장내	----	-----	05:00~ 18:00	구미시농산물 도매시장내				
부칙				부칙				부칙			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2조제4항중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 상장 예외품목취급 중도매인의 정산창구 이용과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는 제85조제1항의 표준하역비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				제1조(시행일) ----- ----- ----- ----이용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				제1조(시행일) (개정안과 같음)			